

의안 번호	제3368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11월 16일 배강민 의원
- 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11월 24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3년 11월 24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3년 11월 24일

2. 개정이유

- 2023년 8월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약칭 : 청탁금지법 시행령)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'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확대' 및 '선물 등의 가액 범위' 변경 사항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(청탁금지법 시행령) 별표 1, 별표 2 적용 개정(안 제11조, 안 제14조)
- 별표 1(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), 별표 2(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) 삭제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별첨자료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 별표1 및 별표2를 삭제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향후 상위법령 개정애 자동 연동되도록 함. 이는 자치입법의 체계적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생략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10. 주문사항 : 없음
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원안 붙임

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제1호 중 “별표 1”을 “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별표 2”를 “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”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다.

② ~ ⑧ (생략)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조문대비표(별표)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음식물 · 경조사비 · 선물 등의 가액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범위</u>(제11조제3항제1호 관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음식물(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) : 3만원 2. 경조사비 : 축의금 · 조의금은 5만원. 다만, 축의금 ·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·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. 3. 선물 : 금전, 유가증권,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. 다만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(이하 “농수산물”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, 이하 “농수산가공품”이라 한다)은 10만원으로 한다. <p>비고</p> <p>가. 제1호, 제2호 본문 · 단서 및 제3호 본문 ·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나. 제2호 본문의 축의금 · 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 ·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· 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,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</p>	<p>[별표 1] <삭제></p>

는 안 된다.

다.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,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라.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, 직무관련자,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
[별표 2]

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(제14조제1항 관련)

1.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

가.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: 40만원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(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) : 100만원

다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, 외국정부, 외국 대학, 외국연구기관, 외국학술단체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.

2. 적용기준

가.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 당,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.

나.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

[별표 2] <삭제>

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
다.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.

라.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.